

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2000 - 1

제출일자 : 2000. 1. 13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전상·공상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주차요금 면제 대상 신설(안 제9조제1항제4호)
 - 감경대상 국가 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·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면제대상으로 신설하고
- 주차요금 감경 대상 수정(안 제9조제2항제1호)
 -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·공상군경 해당자는 제외하여 면제대상으로 함.

■ 개정근거

- 건설부 노정30051 - 18572('98. 9. 19)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(상이등급구분등)

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·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
제9조제2항제1호의 "국가유공자"를 "국가유공자(상이등급을 받은 전상·공상군경 해당자 제외)"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요금의 감면) ① 노상 및 직영 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p> <p>1 내지 3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② 노상 및 직영 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.</p> <p>1. <u>국가유공자</u>,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</p> <p>2 내지 3 (생략)</p>	<p>제9조(현행과 같음)</p> <p>1 내지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· 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국가유공자(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· 공상군경 해당자 제외)</u>,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</p> <p>2 내지 3 (현행과 같음)</p>